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1
----------	-----

2021. 12. 16.(목)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연철흙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1년 1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2월 1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연철흙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화재로 인한 사망은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는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窒息)가 큰 비율을 차지함.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로 유독가스 흡입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확산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일정 시간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경기, 인천, 제주 및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 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입법예고('21.10.21. ~ '21.10.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서는 비치장소, 비치량,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1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연철흙,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전원표, 황규철,
송미애

1. 제안이유

-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협 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조례안 예고 : 2021.10.21. ~ 2021.10.27.(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도민
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이하 “방연마스크” 라 한다)란 화재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
 - 나. 충청북도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
립한 의료원
 -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2. 비용발생 요인

- 도, 도 소속기관, 도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 도 관리 또는 위탁 시설·기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3. 관련조문

-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안 제3조)
- 충청북도가 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기관 예산지원 가능(안 제4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부서별 방화관리자 등 필수인원(비상대피 담당자 등 정원의 약 20%) 기준
- 단가 : 방연마스크 1매당 20천원(평균시장가격)
- 방연마스크의 사용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1차년도에 비치 후 시중 사용기한 경과(6차년도)시 주기적 반영을 전제로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연도별 추계	24,920	24,920				

다. 재원조달방안

- 부서별 소액의 운영예산(일반수용비)으로 시행(별도 예산 미편성)
※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충당 또는 출연금 예산 교부 시 반영 검토

라. 산출내역

<충청북도>

(단위: 명, 원)

구 분	정원	정원의 20%	단가	소요예산	비고
총 계	4,672	934		18,680,000	
본청	1,345	269	20,000	5,380,000	
의회사무처	76	15	20,000	300,000	
직속기관	2,880	576	20,000	11,520,000	
사업소	292	58	20,000	1,160,000	
출장소	63	13	20,000	260,000	
합의제 행정기관	16	3	20,000	60,000	

<출자·출연기관(13개)>

(단위: 명, 원)

구 분	정원	정원의 20%	단가	소요예산	비고
총 계	1,556	312		6,240,000	
충북연구원	43	9	20,000	180,000	
충북인재양성재단	6	1	20,000	20,000	
충북학사	59	12	20,000	240,000	
충북신용보증재단	69	14	20,000	280,00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0	8	20,000	160,00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8	14	20,000	280,000	
충북테크노파크	172	34	20,000	680,00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30	6	20,000	120,000	
충북문화재단	26	5	20,000	100,000	
청주의료원	598	120	20,000	2,400,000	
충주의료원	406	81	20,000	1,620,000	
충북여성재단	14	3	20,000	60,00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5	5	20,000	100,000	